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범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93

발의연월일 : 2009. 11. 9.

발 의 자 : 이범관・김우남・유성엽
송영선・김성회・나경원
조전혁・홍사덕・이한구
김옥이・이춘식・김충환
진 영・주광덕・홍일표
이한성・구상찬・이성헌
오제세・이해봉・김성태
손범규 의원(22인)

제안이유

러시아 및 구소련연방 국가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1900년대 초부터 일제의 폭정을 피해 본격적으로 연해주로 이주해 갔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뒤 1991년 소련연방 해체로 또 다시 삶의 터전에서 떠나야 했던 우리 선조들의 후손으로서, 그 수는 50만명에 달함. 이는 일제강점기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통치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려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임.

특히 50만명에 이르는 고려인 중 약 5만명은 모국의 무관심 속에

불법체류자가 되어 거주국의 극빈층 노동자나 농민계층으로 전락하였고, 이들의 2세·3세는 교육, 의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배제된 채 삶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음.

이제 우리의 국력은 세계 13위에 이르고 있는 바, 과거 역사적 치욕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고려인 동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의 국적 등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고려인동포들이 거주국가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외교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고려인동포가 러시아 및 구소련연방 지역에서 거주국의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국과 교섭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고려인 동포의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 취득사업 추진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고려인동포의 국적 등 체류 자격 취득과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

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외교통상부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려인동포의 국적 등 체류자격 취득사업을 돕거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마.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로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신청이 있는 경우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이 법에 따른 외교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재외동포재단에 위탁(委託)하도록 함(안 제9조).

법률 제 호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러시아 및 구소련연방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의 고려인동포에 대한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을 위하여 정부가 러시아 등 관련국과의 교섭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일본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이 발생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연방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고려인동포가 러시아 및 구소련연방 지역에서 거주국의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국과 교섭하여야 한다.

제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고려인 동포의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 취득사업 추진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 ①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를 둔다.

1. 고려인동포의 거주국 국적 등 체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2.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려인동포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외교통상부장관은 고려인동포의 거주국 국적 등 체류자격 획득과 그들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한다.

1. 국적 등 체류자격 취득사업을 지원하는 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2. 경제사업
   가. 민족자본활용 창업에 대한 지원
   나. 러시아 및 구소련연방 지역에서의 정착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3. 문화사업

가. 문화센터 건립 등 시설 지원

나. 방송과 신문 등 언론에 대한 지원

4. 교육사업

가. 민족학교 및 한국어 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나. 교육시설 및 교재 등의 지원

다. 정보기술 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로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고려인동포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 설치

제정안 제6조는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위원 회의수당, 운영비 등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나. 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제정안 제7조는 경제·문화·교육·기타의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제9조에서 사업수행을 재외동포재단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1)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 비용

제정안 제6조에서는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어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에 의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의 정착지원 등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에는 “CIS지역 동포지원협의회”가 있고 이 협의회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본 제정안의 위원회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CIS지역 동포지원협의회”의 조직 및 기능의 일부가 이관된다면, 제정안의 위원회가 고려인동포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제정안에 의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적을 것이다.

(2) 지원사업 비용

제정안은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각종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은 제정안 시행 이전에도 실시되어 왔다. 2007년 8억원, 2008년 12억원, 2009년 1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2007년과 2008년의 지원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고려인동포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07			2008		
사업	우크라이나 고려인 재정착 활동 지원	-국적취득위원회 활동지원 -농업지원사업	778	우크라이나 고려인동포 재정착 지원	-국적회복위원회 활동지원 -농업지원사업	540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동포 재정착 지원	-동포 IT센터 운영사업	88
				러시아 고려인동포 재정착지원	-전문가 파견 및 영농지도 -시설영농단지 조성 및 운영 -국내초청 시설영농기술 연수	572
계			778			1,200

자료: 재외동포재단 교류지원팀.

[표]를 보면,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회의내용, 외교통상부의 태도 등을 보면 향후 사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제정안의 시행에 의해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이 향후에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제정안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팀 팀 장 정 문 종
분석관 이 경 주
(02-788-3773, bce@nabo.go.kr)